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1-144 |
|---|---|

제안연월일 : 2021. 11. 26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(안 제1조)

나.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(안 제2조)

다. 여비의 지급구분(안 제3조)

라. 운임 및 숙박비 지급(안 제4조)

마.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없음

다. 입법예고:

다. 조례안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)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·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의장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제5조(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및 별표 1”은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제4조 및 별표 1”로 본다.
5.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29조제1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#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철도운임 | 선박운임 | 항공운임 | 자동차(버스)운임 | 숙박비(1야당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1호 | 1등급 | 1등급 | 정액 | 정액 | 46,000 (의장은 실비로 지급) |
| 제2호 | 2등급 | 2등급 | 정액 | 정액 | 30,000 |

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# 관 련 법 령

## ☐ 지방자치법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497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## ☐ 공무원 여비규정 [시행 2021. 5. 25.] [대통령령 제31706호, 2021. 5. 25., 일부개정]

**제29조의2(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)**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.